

수 의 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2020. 6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방역정책과)

1. 개정 이유

수의사법 개정(2020.2.11.)으로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·징수 절차를 마련하고,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,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(안 제24조 및 [별표2]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)

- 법 제3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보 등을 고려한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마련

나. 과징금 부과·징수 절차 신설(안 제25조 신설)

-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

다.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(별표 개정)

-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되었거나 위반행위에 비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, 부과권자의 자의적인 과태료 가중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6. 10.~ 7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중 “별표와”를 “별표 1과”로 한다.

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과징금의 산정기준) 법 제33조의2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”라 한다)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

제25조(과징금의 부과·징수 절차) ① 시장·군수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·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1호라목 본문 중 “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”를 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1호라목에 1)부터 4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동물 소유자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가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란 “50”을 “1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가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란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가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200”을 “2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나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란 “20”을 “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나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란 “40”을 “75”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나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8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다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 “20”을 “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다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 “40”을 “75”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다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 “8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 “20”을 “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 “40”을 “75”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 “8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마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 “20”을 “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마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 “40”을 “75”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마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 “8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바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 “20”을 “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바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

반란 “40”을 “75”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바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8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사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란 “20”을 “3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사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란 “40”을 “6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사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80”을 “9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아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란 “20”을 “3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아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란 “40”을 “6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아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80”을 “9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란 “20”을 “3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란 “40”을 “6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80”을 “9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2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
란 “40”을 “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2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
란 “80”을 “75”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차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
반란 “10”을 “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차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
반란 “20”을 “75”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차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
상 위반란 “4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카목 중 “법 제14조”를 “법 제60조”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타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
반란 “70”을 “3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타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
반란 “140”을 “4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타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
상 위반란 “280”을 “5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파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
반란 “10”을 “6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파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
반란 “20”을 “8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과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4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란 “20”을 “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란 “40”을 “75”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8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2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란 “7”을 “3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2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란 “14”를 “6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2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28”을 “9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거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란 “7”을 “3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거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란 “14”를 “6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거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28”을 “9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

란 “5”를 “3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
란 “10”을 “6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
위반란 “20”을 “9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2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
란 “5”를 “3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2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
란 “10”을 “6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2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
위반란 “20”을 “9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3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
란 “7”을 “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3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
란 “14”를 “75”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3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
위반란 “28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더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
반란 “10”을 “1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더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
반란 “20”을 “2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더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40”을 “2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러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란 “5”를 “1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러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란 “10”을 “2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러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20”을 “4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머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란 “20”을 “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머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란 “40”을 “75”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머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8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버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란 “10”을 “3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버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란 “20”을 “6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버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50”을 “9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서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

반란 “7”을 “6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서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란 “14”를 “8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서목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28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란 “5”를 “5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란 “10”을 “75”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2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2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1회 위반란 “7”을 “6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2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2회 위반란 “14”를 “80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제2호 위반행위 2)의 과태료(단위: 만원)의 3회 이상 위반란 “28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 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<u>별표와 같다.</u> <u><신 설></u>	제2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-- ----- ----- <u>별표 1과</u> -- --. 제24조(과징금의 산정기준) 법 제 33조의2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”라 한다)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<u>별표 2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25조(과징금의 부과·징수 절차) ① 시장·군수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·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다

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
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
에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없는
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
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절차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
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경우	법 제41조제1항제1호	150	200	250
나.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1호	50	75	100
다.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「약사법」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(이 하 "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"이라 한 다)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·투약 한 경우	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2	50	75	100
라.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	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3	50	75	100
마.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	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4	50	75	100
바.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 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5	50	75	100
사. 법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	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6	30	60	90
아.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1호의7	30	60	90
자.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, 용법 및 용량 등 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 력해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1호의8			
1)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않		30	60	90

은 경우 2)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		<u>50</u>	<u>75</u>	<u>100</u>
차.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2호	<u>50</u>	<u>75</u>	<u>100</u>
카. 법 제14조(법 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	7	14	28
타.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한 경우	법 제41조제1항제2호	<u>300</u>	<u>400</u>	<u>500</u>
파. 법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3호	<u>60</u>	<u>80</u>	<u>100</u>
하. 법 제1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·운영한 경우로서 1)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·운영한 경우 2)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·운영한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4호	<u>50</u>	<u>75</u>	<u>100</u>
거.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	법 제41조제2항제4호의2	<u>30</u>	<u>60</u>	<u>90</u>
너.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1)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)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측정을 받지 않은 경우 3)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5호	<u>30</u>	<u>60</u>	<u>90</u>
더. 법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경우	법 제41조제1항제3호	<u>150</u>	<u>200</u>	<u>250</u>
러.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·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6호	<u>10</u>	<u>20</u>	<u>40</u>

며. 법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·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버.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6호의2	<u>50</u>	<u>75</u>	<u>100</u>
서.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 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.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1)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 우 2)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6호의 3 법 제41조제2항제7호 법 제41조제2항제8호	<u>30</u> <u>60</u> <u>50</u>	<u>60</u> <u>80</u> <u>75</u>	<u>90</u> <u>100</u> <u>100</u>
저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(법 제16 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)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9호	10	20	40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2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.
- 다. 나목의 동물진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(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)을 말한다.
- 라.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동물진료업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.
- 마.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은 동물병원 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신규 개설,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,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.
- 1) 수의사인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 제24조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연도의 동물진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
 - 2) 동물진료법인,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연도의 동물진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

2. 과징금 부과기준

등급	연간 총수입액(백만원)	1일당 과징금 금액(원)
1	~ 50 이하	43,000
2	50 초과 ~ 100 이하	65,000
3	100 초과 ~ 150 이하	110,000
4	150 초과 ~ 200 이하	160,000

5	200 초과 ~ 250 이하	200,000
6	250 초과 ~ 300 이하	240,000
7	300 초과 ~ 350 이하	280,000
8	350 초과 ~ 400 이하	330,000
9	400 초과 ~ 450 이하	370,000
10	450 초과 ~ 500 이하	410,000
11	500 초과 ~ 600 이하	480,000
12	600 초과 ~ 700 이하	560,000
13	700 초과 ~ 800 이하	650,000
14	800 초과 ~ 900 이하	740,000
15	900 초과 ~ 1,000 이하	820,000
16	1,000 초과 ~ 2,000 이하	1,300,000
17	2,000 초과 ~ 3,000 이하	2,160,000
18	3,000 초과 ~ 4,000 이하	3,020,000
19	4,000 초과	3,450,000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523